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연월일	2020. 2. .
발 의 자	장미경 의원 외 5명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(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0. 2. .

발 의 자 : 장미경 · 강승수 · 박교상
양진오 · 이선우 · 이지연
의원(6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발언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, 5분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.
- 현행 규칙상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(안 제37조의2 제4항)
-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
 - 안 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제3항 단서
 - 현 행 : “법 제75조(청원의 심사·처리)”
 - 개정안 : “법 제83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”

3. 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8조제3항 단서 중 “법 제75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· ② (생략)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④ · ⑤ (생략)	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법 제8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